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

돌봄의 역할이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질 때, 비로소 '돌봄'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이에 보건복지부는 **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, 가족의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'장애아돌보미'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**하고 있습니다.

그동안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120%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.

실제로 '중증장애아동' 양육 가정 중에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.

그렇지만, 올해(2022년)부터는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(본인부담비율 40%)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 물론, 기존 소득기준 이하 가정은 종전과 같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2022년 기준 중위소득>

(단위: 원/월)

가구원 수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	2,334,000원	3,912,000원	5,034,000원

가구원 수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	6,145,000원	7,229,000원	8,228,000원

보건복지부는 **돌봄지원 대상을 기존 4천 명에서 8천 명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2022년 정규예산(약 484억 원)을 확보**하였으며, **2021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 돌봄지원시간(연 840시간) 또한 유지**됩니다.

<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기준>

구분	시간당 이용요금	
	연 840시간 이내	연 840시간 초과 시
중위소득 120% 이하 (본인부담 비율)	무료 (본인부담 없음)	11,280원 (전액 자부담)
중위소득 120% 초과 (본인부담 비율)	4,510원 (40%)	

신청방법

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**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에 방문하여 신청**하실 수 있으며, **본인 또는 부모·가구원·대리인도 신청 가능**합니다.

서비스 신청 (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-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(가구원, 대리인 신청 가능)

↓

상담 및 조사
-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
-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·등록

↓

대상자 선정 및 통지
- 선정 및 결과 통지 (보호자, 사업시행기관)

정부는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가정에게 더욱 두터운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